개인대출신청서

SPC CAPITAL

■ 공통필수 기재사항 ※ 아래 필수기재사항 작성만으로도 상품이용계약이 가능합니다.

개인 인적 사항	고객정보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사업장주소		
공통 사항	연락처	자택	휴대폰	
		사업장	FAX	
	우편물수령지	☐ 주민등록지 ☐ 거주지 ☐ 사업장	E-mail주소	
	대출실행	( )은행 / 계좌번호	예금주	
	결제정보 (자동이체)	( )은행 / 계좌번호	예금주	
		결제일선택 ☐ 3일 ☐ 13일 ☐ 23일 ☐ 27일 ☐ 기타( )		
		※본인은 자동이체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기에 상기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하며, 귀사와 본인이 개설한 결제계좌를 통해 자동이체 및 즉시 출금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즉시출금이란 연체금 및 중도상환 등 고객과 대금 정산 필요시 고객 요청에 따라 실시간으로 출금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인 (인/서명)		

※ 아래의 정보수집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합한 구매권유(만65세 이상인자, 은퇴자, 주부 등에게 기한이익상실등 상품설명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가 아래의 정보제공에 동의 하시면 상품에 대한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하여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가 진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 추가 설명 원함 (65 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기타) ☐ 추가설명 원치 않음

■ 직장정보 기재사항 ※대출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로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직장정보	직장명 (사업자명)	부서명	직위
	연소득 만원	재직기간 년 개월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 금융상품 이용계약 체결에 필수적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필요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 기재사항 ※ 아래의 선택 기재사항은 한도 산정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신용평점 가점요인으로 적용되어 한도가 상향 될 수 있으니 필요 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요청 정보	주거형태	☐ 아파트 ☐ 단독 ☐ 연립/빌라 ☐ 전원주택 ☐ 기타( )	
	주거소유	☐본인소유 ☐가족소유 ☐본인전세 ☐가족전세 ☐기타( )	거주기간 년 개월

SPC CAPITAL **주식회사 에스피씨캐피탈**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양재동) 2층

개인대출약정서 (회사용)

금융감독원 약관심사 완료일자 : 2018년 10월 8일

■ 대출조건을 적어주세요

유 형	□신용대출 □담보대출		
대 출 금 액	대출원금 금 원정	대출이자율 % (고정금리)	대출기간 총 개월
상 환 방 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개월) 후 잔여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불상환 □기 타( )		
대 출 기 간	여신개시일 년 월 일	여신기간만료일 년 월 일	이자(원리금)납입일 매월 일
담 보 조 건	□급여담보 □전세권담보 □임차보증금 □장비담보 □차량근저당 □부동산근저당 □기타( )		
중도상환수수료	만기1년 이상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X1%(부대비용)+중도상환원금x(-1%)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로 합니다. *30일 미만 상환시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만기1년 미만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x( )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로 합니다. *30일 미만 상환시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지연배상금률	연 % (대출이자율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 이내)		
근저당설정	설정금액 원 (대출금액의 %)		

■ 자금용도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세요

자 금 용 도	□투자 □현금서비스상환 □채무통합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결혼 □기타( )

■ 담보제공인 정보를 적어주세요 ※아래 기재사항은 담보제공인의 담보능력 파악, 계약내용 전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담보제공 종류	담 보 종 류	□특정근담보(당해채무 : 기간연장, 증액포함) □한정근담보 (특정+동일종류 신규대출)			
	채 무 최 고 액		담보기간	개월	
담보제공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소 득 유 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자 택 주 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 거 형 태	□아파트 □단독 □연립/빌라 □전원주택 □기타( )			
	주 거 소 유	□본인소유 □가족소유 □본인전세 □가족전세 □기타( )	거주기간	년 개월	
	직 장 명 (사 업 자 명)		재 직 기 간 (사 업 기 간)	년 월	
	부 서 명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기타( )	
	직 위		직장전화		
	직 장 주 소 (사 업 장 주 소)				
	우 편 물 수 령 지	□주민등록지 □거주지 □직장 □사업장			

비 용	▣ 근저당권 등 설정비용 부담주체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 채무자(또는 설정자)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부담 ▣ 인지세 납부내역 대출금 5,000 만원 이하 : 면제 / 1 억원 이하 : 7 만원 10 억원 이하 : 15 만원 / 10 억원 초과 : 35 만원 ▣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50% 부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비용의 부담)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기 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대출 약관'(제6조) 및 핵심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인(본인) 및 담보제공인은 상기 신청내용(대출조건/보증조건 및 세부규정)과 뒷면 약정서 약관(개인대출 약관 및 자동이체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확약하며, 본인은 귀사로부터 대출조건 등이 포함된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약정서 사본을 수령하고 약정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 됩니다.

20 년 월 일

대출신청인 (인/서명)

담보제공인 (인/서명)

개인대출 약관

금융감독원 약관심사 완료일자 : 2018년 10월 8일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주식회사 에스피씨캐피탈(이하 "금융회사" 라 합니다)과 개인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 3조 (대출의 실행)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대출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을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 기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6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 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①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와 협의하여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납입합니다.
②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지연배상금률'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지연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④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 중 높은금리를 약정이자율로 적용합니다.
1.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2.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 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⑥ 금융회사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SMS, 이메일, 우편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 5조 (금리인하요구권)
① 4조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시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6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채무자
2. (근)저당권과 관련된 비용
가.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나.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 비용 : 금융회사
- (근)저당권 해지 비용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다.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금융회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라.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균분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기로한 비용을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 7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행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 9조 (결제방법)
①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 11조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① 채무자는 이 대출 약정서 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12조 (채권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행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 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한다.

제 14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15조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신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 자동이체 약관 】
1.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고객" 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에스피씨캐피탈(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 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 순위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약관신고 수리일자 : 2016.06.29]

개인대출 핵심 설명서

SPC CAPITAL

에스피씨캐피탈 귀중

본 설명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11(설명의무 등)에 따라, 개인대출 계약에 대한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계약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약관 및 계약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용 상품 (□ 담보대출 □ 신용대출)

□ 임직원 대출 □ 기타( )

2. 담보종류

□ 급여담보 □ 전세권담보 □ 임차보증금 □ 장비담보 □ 차량근저당 □ 부동산근저당 □ 기타( )

3. 대출금액

개인대출 : 원

※ 최초 대출 원금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출기간

개인대출 : 년

※ 총 대출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과 원리금을 납부하는 대출 기간의 합

5. 대출금리

개인대출 : 연 %

금 리 구 분: □ 고 정

※ 금리변동주기 : 대출기간동안 고정금리

※ 대출금리는 자금조달비용, 신용원가, 업무원가 등을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자금조달비용은 회사의 자금조달에 드는 비용을 의미하고 신용원가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업무원가는 인건비, 물건비 등 업무수행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말합니다.

6.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 상환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원리금 납부(매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은 달라 짐)

□ 거치 후 원리금 균등상환: 거치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부터 매월 동일한 원리금 납부

□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하다, 만기 도래시 대출금 전액 상환

□ 기 타 : ( )

7. 상환금액

결제예정금액: 월 원

※ 월 상환금액은 납입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중도상환수수료

1년이상: 중도상환 원금 ×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1%) × 잔존기간 / (대출기간-30일)

1년미만: 중도상환 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1%) × 잔존기간 / (대출기간-30일)

※ 30일 미만 사용시 "대출기간을"30일로 간주한다. ※ [1] 중도상환수수료율 : 2% 이내

9. 지연배상금율

연 %(대출이자율 + 최대3%, 법정 최고금리 이내)

※ 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높은 금리를 '대출이자율'로 적용합니다.

가.『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나.『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 지연배상금은 상환해야 할 금액을 상환일에 미상환할 경우 부과되며, 이 경우 고객님의 연체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 됩니다.

※ 연체정보는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기타(비용)

▣ 근저당권 등 설정비용 부담주체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또는 설정자)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채권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부담 (인지세) : 원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되며, 고객과 금융회사가 50%씩 부담합니다. 인지세 납부내역 대출금 5,000만원 이하 : 면제 / 1억원 이하 : 7만원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기타수수료 : (항목) (금액) 원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비용의 부담)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설명서는 계약상 주요 내용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은 신청서 및 개인대출 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해 계약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개인대출 핵심 설명서

SPC CAPITAL

11.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계약 철회권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계약 철회권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까?(작성 예 듣고이해함)

※ 금리인하 요구권

가.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당사의 금융상품(대출, 할부, 리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 신청 대상 및 방법

- 가계 및 기업대출 고객
-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고객
- 대출당시 보다 소득이나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이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신청 방법 :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Fax(0505-073-0751)로 제출 또는 유선 신청

다. 예외 사항

- 금리할인이 선 적용된 상품 또는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된 상품의 경우 제외
- 행사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당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가. 신청기간

- 대출계약 철회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의해 철회기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철회기간 이내의 대출원금 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등을 전액 상환해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 기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1)이내에만 신청 및 상환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

나. 신청기준

- 대출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또는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의 경우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제한

-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계약 후 주요 내용 변경 시 유선을 통해 내용 전달 및 동의 요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인은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해 계약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사업자대출신청서

SPC CAPITAL

■ 이용자 구분 ☐ 개인사업자 ☐ 법인

■ 공통필수 기재사항 ※ 아래 필수기재사항 작성만으로도 상품이용계약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	고객정보	성명(한글)		생년월일
	주소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사업장주소		
	사업자정보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개점일(사업자등록년월일)
법인	고객정보	법인명(한글)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지	사업장주소		
공통	연락처	자택		휴대폰
		사업장		FAX
	우편물수령지	☐ 주민등록지 ☐ 거주지 ☐ 사업장		E-mail 주소
	대출실행	( )은행 / 계좌번호		예금주
	결제정보 (자동이체)	( )은행 / 계좌번호		예금주
		결제일선택 ☐ 3일 ☐ 13일 ☐ 23일 ☐ 27일 ☐ 기타( )		
		※본인은 자동이체약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기에 상기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하며, 귀사와 본인이 개설한 결제계좌를 통해 자동이체 및 즉시 출금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즉시출금이란 연체금 및 중도상환 등 고객과 대금 정산 필요시 고객 요청에 따라 실시간으로 출금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인 (인/서명)		

※ 아래의 정보수집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합한 구매권유(만65세 이상인자, 은퇴자, 주부 등에게 기한이익상실등 상품설명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가 아래의 정보제공에 동의 하시면 상품에 대한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하여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가 진행됨을 안내 드립니다.

☐ 추가 설명 원함 (☐ 65 세 이상 고령층 ☐ 은퇴자 ☐ 주부 ☐ 기타) ☐ 추가설명 원치 않음

■ 직장정보 기재사항 (법인고객 제외) ※대출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로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직장정보	직장명 (사업자명)	부서명	직위
	연소득 만원	재직기간 년 개월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 금융상품 이용계약 체결에 필수적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필요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 기재사항 ※ 아래의 선택 기재사항은 한도 산정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신용평점 가점요인으로 적용되어 한도가 상향 될 수 있으니 필요 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요청 정보	주거형태	☐ 아파트 ☐ 단독 ☐ 연립/빌라 ☐ 전원주택 ☐ 기타( )	
	주거소유	☐본인소유 ☐가족소유 ☐본인전세 ☐가족전세 ☐기타( )	거주기간 년 개월

■ 법인업무담당자

담당자	법인명(한글)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 법인 업무 담당자 기재(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확인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		

SPC CAPITAL **주식회사 에스피씨캐피탈**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620 (양재동) 2층

사업자대출약정서 (회사용)

금융감독원 약관심사 완료일자 : 2018년 10월 8일

■ 대출조건을 적어주세요

유 형	□신용대출 □담보대출(부동산 담보대출 이외)		
대 출 금 액	대출원금 금 원정	대출이자율 연 % (고정금리)	대출기간 총 개월
상 환 방 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개월) 후 잔여기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불상환 □기 타( )		
대 출 기 간	여신개시일 년 월 일	여신기간만료일 년 월 일	이자(원리금)납입일 매월 일
담 보 조 건	□전세권담보 □임차보증금 □장비담보 □차량근저당 □채권담보 □기타( )		
중도상환수수료	만기1년 이상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X1%(부대비용)+중도상환원금x(-1%)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로 합니다. *30일 미만 상환시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만기1년 미만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x( )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로 합니다. *30일 미만 상환시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지연배상금률	연 % (대출이자율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 이내)		
근저당설정	설정금액 원 (대출금액의 %)		

■ 자금용도에 대한 정보를 적어주세요

자 금 용 도	□ 사업(운전)자금(용도:) □기타 사업자금(용도:)

■ 보증인정보를 적어주세요 ※ 아래 기재사항은 연대보증인(담보제공인)의 담보능력 파악, 계약내용 전달 등을 위해 취득하는 정보입니다.

연대보증 입보사유 (택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법인(1人)	□최대주주 □특수관계인포함과점(대주주(30%이상)) □대표이사(고용임원제외) □무한책임사원			
	기 타	□상기 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2항 제4호, 제5호에 해당			
보증종류	보증 종류	□특정근보증(당해채무 : 기간연장, 증액포함) □한정근보증(특정+동일종류 신규대출, 법인대출에 한함)			
	보증채무최고액		보증기간	개월	
□연대보증인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소득유형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자택주소				
	연 락 처	자택	휴대폰		
	주거형태	□아파트 □단독 □연립/빌라 □전원주택 □기타( )			
	주거소유	□본인소유 □가족소유 □본인전세 □기타( )	거주기간	년 개월	
□담보제공인	직장명 (사업자명)		재직기간 (사업기간)	년 월	
	부 서 명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기타( )	
	직 위		직장전화		
	직장주소 (사업장주소)				
	우편물수령지	□주민등록지 □거주지 □직장 □사업장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여신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초 신청 용도외 유용 사실이 확인되어 건전한 계속거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여신금융회사의 서면 통지에 의해 모든 여신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용도외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됩니다.

비 용	▣ 근저당권 등 설정비용 부담주체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부담	▣ 인지세 납부내역 대출금 5,000만원 이하 : 면제 / 1억원 이하 : 7만원 10 억원 이하 : 15 만원 / 10 억원 초과 : 35 만원 ▣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50% 부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비용의 부담)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기 비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자대출 약관'(제6조) 및 핵심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인(본인) 및 연대보증인(담보제공인)은 상기 신청내용(대출조건/보증조건 및 세부규정)과 뒷면 약정서 약관(사업자대출 약관 및 자동이체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확약하며, 본인은 귀사로부터 대출조건 등이 포함된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약정서 사본을 수령하고 약정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 됩니다.

20 년 월 일

대출신청인 (인/서명)

□연대보증인
□담보제공인 (인/서명)

사업자대출 약관

금융감독원 약관심사 완료일자 : 2018년 10월 8일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 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주식회사 에스피씨캐피탈(이하 "금융회사" 라 합니다)과 일반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 3조 (대출의 실행)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대출금액, 만기, 대출금리 수준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을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 기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6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 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①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와 협의하여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납입합니다.
②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률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지연배상금률'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지연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④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리 중 높은금리를 약정이자율로 적용합니다.
1.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2.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 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⑤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⑥ 금융회사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SMS, 이메일, 우편 등 차주가 선택한 수단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 5조 (금리인하요구권)
① 4조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시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 6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비용을 부담 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 증명 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채무자
2. (근)저당권과 관련된 비용
가.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나.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 비용 : 금융회사
- (근)저당권 해지 비용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다.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금융회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라.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균분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 7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행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 8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④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 9조 (결제방법)
①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재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 10조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 11조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① 채무자는 이 대출 약정서 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 12조 (채권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 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 13조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행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 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한다.

제 14조 (관할법원)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15조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신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 자동이체 약관 】
1.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고객" 이라 합니다)는 약정된 납부일을 기준으로 ㈜에스피씨캐피탈(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합니다) 계좌(이하 "지정계좌 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처리 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3.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 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이체일 현재 회사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이체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5. 자동이체 일자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하며, 자동이체일 변경으로 인해 고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6. 납부자의 사정으로 예금계좌를 변경하거나 자동납부신청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자동납부(해지)신청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할 것이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고객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7. 자동납부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합니다.
8.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납부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약관신고 수리일자 : 2016.06.29]

사업자(개인/기업) 대출 핵심 설명서

SPC CAPITAL

에스피씨캐피탈 귀중

본 설명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11(설명의무 등)에 따라, 사업자 대출 계약에 대한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계약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약관 및 계약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본 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용 상품(☐ 신용대출 ☐ 담보대출(부동산 담보대출 이외))

☐ 가맹점 대출 (☐ 창업자금 ☐ 환경개선자금 ☐ 소액운영자금) ☐ SPC 협력업체 대출 ☐ 기타 사업자금( )

2. 담보종류

☐ 전세권담보 ☐ 임차보증금 ☐ 장비담보 ☐ 차량근저당 ☐ 채권담보 ☐ 기타( )

3. 대출금액

사업자대출 : 원

※ 최초 대출 원금 기준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출기간

사업자대출 : 년

※ 총 대출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 기간과 원리금을 납부하는 대출 기간의 합

5. 대출금리

사업자대출 : 연 %

금 리 구 분: ☐ 고 정

※ 금리변동주기 : 대출기간동안 고정금리

※ 대출금리는 자금조달비용, 신용원가, 업무원가 등을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자금조달비용은 회사의 자금조달에 드는 비용을 의미하고 신용원가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업무원가는 인건비, 물건비 등 업무수행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말합니다.

6.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상환: 상환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원리금 납부(매월 원금과 이자의 비율은 달라 짐)
☐ 거치 후 원리금 균등상환: 거치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 종료 후부터 매월 동일한 원리금 납부
☐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동안 이자만 납부하다, 만기 도래시 대출금 전액 상환
☐ 기 타 : ( )

7. 상환금액

결제예정금액: 월 원

※ 월 상환금액은 납입시기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8. 중도상환수수료

1년이상: 중도상환 원금 ×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1%) × 잔존기간 / (대출기간-30일)
1년미만: 중도상환 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1%) × 잔존기간 / (대출기간-30일)

※ 30일 미만 사용시 "대출기간을"30일로 간주한다. ※ [1] 중도상환수수료율 : 2% 이내

9. 지연배상금율

연 %(대출이자율 + 최대3%, 법정 최고금리 이내)

※ 이자율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중 높은 금리를 '대출이자율'로 적용합니다.
가.『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나.『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 대출금리

※ 지연배상금은 상환해야 할 금액을 상환일에 미상환할 경우 부과되며, 이 경우 고객님의 연체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 됩니다.

※ 연체정보는 개인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기타(비용)

▣ 근저당권 등 설정비용 부담주체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채권자 :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채무자(또는 설정자)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설정자)의 균등부담	▣ 인지세 납부내역 대출금 5,000만원 이하 : 면제 / 1억원 이하 : 7만원 10 억원 이하 : 15 만원 / 10 억원 초과 : 35 만원 ▣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50% 부담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비용의 부담)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설명서는 계약상 주요 내용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은 신청서 및 개인대출 약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해 계약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사입자(개인/기업) 대출 핵심 설명서

SPC CAPITAL

11.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계약 철회권

금리인하 요구권, 대출계약 철회권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까?(작성 예 듣고이해함)

※ 금리인하 요구권

가.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 당사의 금융상품(대출, 할부, 리스)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이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등을 통하여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나. 신청 대상 및 방법

- 가계 및 기업대출 고객
-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고객
- 대출당시 보다 소득이나 신용상태가 현저히 개선이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신청 방법 :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Fax(0505-073-0751)로 제출 또는 유선 신청

다. 예외 사항

- 금리할인이 선 적용된 상품 또는 특별(우대)금리가 적용된 상품의 경우 제외
- 행사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도 당사의 심사기준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가. 신청기간

- 대출계약 철회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의해 철회기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철회기간 이내의 대출원금과 대출이자 및 부대비용등을 전액 상환해야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 기간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1)이내에만 신청 및 상환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권리가 자동 소멸됩니다.

나. 신청기준

- 대출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또는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의 경우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제한

-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계약 후 주요 내용 변경 시 유선을 통해 내용 전달 및 동의 요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2.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여신 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초 신청 용도외 유용 사실이 확인되어 건전한 계속거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여신금융회사의 서면 통지에 의해 모든 여신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해당여신을 즉시 상환)** 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용도외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이 제한)** 됩니다.

본인은 대출 담당직원으로부터 계약의 주요 내용에 관해 계약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